

# 2015 일반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1. 대상부서 : 경영본부 소관부서(전략기획처, 경영지원처)

2. 감사범위 : 2013. 10 ~ 2015. 8월까지 수행업무 전반

### 3. 감사중점

가. 업무수행시 법령·사규의 준수여부

나. 업무수행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업무유무

다. 예산, 회계 등 재무관련 업무에 대한 적정성

라. 지출원인 행위 및 예산집행 관리의 객관성·투명성

마. 물품구매, 검수, 운용 등 자산관리업무의 적정성 등

### 4. 감사기간 및 인원

가. 감사기간 : 2015. 9. 01 ~ 9. 18 (14일)

나. 감 사 인 : 감사실장 외 4명

## II. 감사결과

###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행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비고
계	개선	주의	시정	통보	교육	현지시정	계	징계	경고	주의	
12	5	2	1	2	1	1	-	-	-	-	

##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의견 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1	<p>○ 사옥 및 토지임대시 보증금 납부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사옥 및 토지임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19조(대가의 선납)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준용하면서 계약체결시 지급보증금에 대한 약정만을 명시할 뿐,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추가하지 않고 계약체결 하고 있다.</li> <li>- 이에 따라 본사사옥 임대 및 토지임대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되더라도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가 없다.</li> <li>- 본사사옥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업체에 대해 임대면적 80㎡당 1대의 무료주차 제공과 아울러 본사 지하주차장 1층 30면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역사 편의시설물 및 상가 임대와 형평성을 달리하여 연간임대료를 선납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 한 것으로 판단되며,</li> <li>-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의 공실발생 등 재정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본사사옥 임대 및 토지임대 건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자 상호간의 계약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li> </ul>	<p>본사사옥 및 토지임대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p>	개선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2	<p>○ 학비보조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규정 명확화</p> <p>-가족수당과 학비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나,</p> <p>-학비보조금 중복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18조(반환 및 회수) 제2항 제3호에 '이미 학비를 지급하였으나, 타 기관, 단체에서 장학금 및 학비를 받은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 기관, 단체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도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오해를 낳고 있다.</p> <p>- 학비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규정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후회수 조치 등의 문제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시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p>	<p>①학비보조금과 관련하여 투명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중복지급 금지 관련조항을 개정</p> <p>② 또한 학비보조금 지급신청 및 부양가족 신고서 작성 시 지급금지 대상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보완</p>	개선	
3	<p>○ 계약업무매뉴얼 개선 &lt;선금지급 업무절차 조정&gt;</p> <p>-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지급대상 적격여부, 지급범위, 잔여이행기간,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목적,</p>	<p>① 계약업무매뉴얼의 선금지급 업무절차 조정(일상감사 의뢰 : 계약부서→감사실)</p>	개선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감사규정시행내규 제20조(일상감사의 범위) 및 제21조(일상감사의 시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백만원을 초과하는 선금의 지급시에는 최종결재권자 결재전에 피감사서류 일체를 감사부서에 회부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 받도록 하고 있다.</li> <li>- 그런데 계약업무매뉴얼 제5절 대가의 지급 (1. 선금) 선금지급 업무절차에는 발주부서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선금신청서, 사용계획서, 각서만을 첨부하여 일상감사 의뢰토록 하고 , 선금지급의 시행부서인 계약부서에서는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있어 일상감사 의뢰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일상감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li> <li>-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매뉴얼의 선금지급 업무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li> </ul> <p><b>&lt;계약업무매뉴얼 수시 보완&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업무매뉴얼은 각종 계약시 직원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따라서 계약부서에서는 계</li> </ul>	<p>② 아울러 계약업무매뉴얼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개정사항 발생시 수시 보완하여 시행</p>		

연도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약업무매뉴얼에 기술된 사항이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현행화 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런데 2014년 11월 계약업무매뉴얼 제정이후 상위법령의 폐지(건설기술관리법), 회계예규의 변경(3회), 관련고시의 변경(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등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부서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통보만 하였을 뿐, 계약업무매뉴얼을 수정하지 않은체로 운영하고 있다.</li> <li>-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계약업무매뉴얼 제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령법령 등 개정사항 발생시 수시로 확인하여 계약업무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li> </ul>			
4	<p>○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사업 추가물품등록 시스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RO 구매대행사업은 최초 기본 계약품목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본 품목 이외의 추가품목은 공사에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다. 이때 대행업체에서는 공사에서 요청한 추가품목에 대하여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공사에 제시하며, 공사가 승인한 경우 추가품목을 등록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li> <li>- 구매대행 협약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공급하는 품목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고 확인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MRO 추가품목 등록시 대행업체, 요구부서, 계약부서의 시장조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li> <li>② 아울러 기존 계약품목에 대해서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단가검증을 실시</li> </ul>	개선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대행업체로 하여금 그차액의 2배를 보상토록 함으로써 성실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업체에서 제시하는 품목단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구매대행사업의 실효성이 퇴색되는 것이다.</li> <li>- 그런데 현재 추가품목 등록에 따른 확인절차를 보면 대행업체에서 조사한 품목단가를 요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2중으로 확인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온라인 구매 시스템상의 확인란에 체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승인에 그치고 있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지에 대한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li> <li>-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도입한 MRO 구매대행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등록 품목단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최종 승인시 단가 조사자료의 첨부등록 등 품목 단가 검증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li> </ul>			
5	<p>○ 정원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4조(정원)에 의하면 공사의 정원은 부서(팀)별, 직렬·직급별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공사 총 정원은 564명으로 하고 있고, 그 중 결원을 20명(사무 6명, 기술 14명) 유지하고 있다. 또한 同 내규 제7조(분장사무)에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서별·팀별 분장업무를 규정하고 있다.</li> </ul>	<p>타직류 정원·인력배치를 종합 검토하여 조직정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p>	개선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별·직렬별 타직렬 정원배치 현황을 보면, 본사사옥관리의 기술 전문성 필요를 이유로 기술직렬의 직원이 본사사옥관리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술부서 현장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수의 기술부서에 사무직렬의 직원이 정원으로 배치되어 있다.</li> <li>- 그런데 사무위임전결내규 제3조(전결권 배분의 원칙)에 의거한 팀장 전결사항인 부서 분장사무를 살펴본 결과 사옥관리(본사, 용산·옥동기지) 업무를 수행하는 3개팀의 사옥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 등을 포함한 동일 분장업무였으며, 그 수행자로 본사는 기술직렬이 수행하고 있으며 용산·옥동기지는 각각 사무직렬이 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li> <li>- 이러한 분장업무 수행과 배치인력의 직렬 관계를 살펴볼 때, 사옥관리는 기술직렬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당위성이 적으며, 따라서 본사 사옥관리 인력을 원소속(기술부서)으로 정원배치하여 현장인력의 부족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사료된다.</li> </ul>			
6	<p>○ 공사 하자보증금을 적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li> <li>- 동법 제21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li> </ul>	<p>① △△△△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대 상공사에 대한 적정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책정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p>	주의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 공사금액의 3%이상 으로 책정하여야 한다.</li> <li>-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각부서에서 공사발주시 의뢰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의 적정성을 살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검토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이 적정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li> <li>- 그런데 동일 공사임에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1건이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규정한 공사중 일반건축공사에 해당함에도 3%가 아닌 2%로 적용한 사례가 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임에도 보증금률을 3%로 적용치 않고 2%로 적용한 사례가 1건으로 총 7건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부적정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li> </ul>	<p>② 시행부서에서 공사 발주품의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하자관리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p>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7	<p>○ 근무복 제작구매 검사업무 부적정</p> <p>&lt;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성하계 및 동계 근무복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제4차 전보자 성하계 근무복 제작’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2014.8.28)을 지나서 납품함에 따라 최종검사일인 9월 19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li> <li>-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22일간에 대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어야 하나 지체일수 3일을 누락한 19일만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을 부적정 부과하였다.</li> </ul> <p>&lt;물품 검사조서 작성 부적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가 근무복 납품시에는 물품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적정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li> <li>- 2014년 제2차 성하계·동계 근무복 제작과 2015년 제2차,3차,4차 근무근무복 제작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근무복에 대한 검사후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사에 대한 기한이 상당시간 소요되었음에도 검사조서에는 실제 검사완료일자가 아닌 검사요청일자에 검사완료한 것으로 부적정 작성하였으며,</li> <li>- 2015년 제2차 하계·춘추 근무복 제작의 경우에는 검사요청일(5월 12일)로부터 14일 이내(5월 2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팀에서는 근무복 납품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임·직원 근무복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적정 실시하시고,</li> <li>② 관련법령을 숙지·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ul>	주의	

연월일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시 시정조치를 지시하여 최종검사에 합격한날까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검사기한인 5월 25일보다도 23일 지연된 6월17일에야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조서 작성시에는 5월12일에 검수완료한 것으로 부적정 작성하였다.</p>			
8	<p>○ <b>광고료 체납관리 소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 내규 및 역구내광고 대행계약서 제6조(광고료의 납부)에는 ‘계약금액을 균등 분할한 해당 월광고료를 매월 10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 내규 제12조(보증금) 및 역구내광고 대행계약서 제5조(지급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에 의하면 미납광고료 등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5개월분의 지급보증금(보증증권)을 징구토록 되어 있다.</li> <li>- 그런데 88종합공사와 계약한 역구내광고 대행계약 건은 2015년 4월 1일 연장계약 후 5월 10일까지의 광고료만을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광고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이다.</li> <li>- 광고료의 3개월분 이상 연체는 계약서 제23조(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만큼, 부대사업수입 체납금 수납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차 독촉 → 1차 독촉 이후 30일 이내 2차 독촉 →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팀에서는 체납액을 조기징수(10월 10일까지)하여 지급보증금 초과를 방지하시기 바라며,</li> <li>② 향후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미수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li> </ul>	시정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차 독촉 이후 30일 이내 3차 독촉 → 3차 독촉 이후 20일 이내 이행최 고 등의 체납액 독촉 절차 등을 철저 히 준수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p>○ 유연근무제 실태조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아래 정부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자율적으로 노력토록 유도하고 있으며,</li> <li>- 복무총괄부서인 △△팀에서는 2012년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연근무제 도입시 운영과정에서 업무공백, 고객서비스 소홀, 업무성과 저하, 일하는 분위기 저해,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매분기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유형별 실시인원, 직원만족도, 생산성향상여부 등)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유연근무실시에 따른 문제점 도출·개선을 기하고자 하였다.</li> <li>- 그런데 △△팀에서는 2012년 2월 유연근무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유연근무 실시인원에 대한 현황만을 집계하여 광주광역시에 제출 하였을 뿐, 각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생산성 향상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li> </ul>	유연근무제도 운영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적기실시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유연근무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통보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 설문조사 1회실시),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사장방침)에 명시된 분기별 사장보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보고를 소홀히 하였다.			
10	<p>○ 사회공헌활동 추진위원회 운영절차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공사는 각종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을 마련·운영중에 있으며, 지침에 따라 각 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li> <li>- 또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장으로 하여금 매년 반기별로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장에게 활동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총괄부서장은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열린 경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li> <li>- 우리공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임직원 5천명 모금운동(급여 일괄공제)을 전개하여 연간 38백만원(2014년 기준)을 모금·집행 하고 있으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팀에서는 사회공헌활동과 관련 위원회운영, 집행절차, 결과의 공개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추진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li> <li>②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인 □□□□팀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공사 각종 위원회를 점검·정비하고 그 결과를 제출</li> </ul>	통보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에서는 2015년 1월 임·직원 참여 창구로써 자발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적절한 사용 및 공헌활동의 전반적인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인 ‘사회공헌활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li> <li>-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임·직원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였고, 투명하고 체계적 사용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운영회칙을 마련하였으며 년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한 점은 인정되나,</li> <li>- 사회공헌활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운영과정에서는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명시된 설치절차 및 활동내역관리를 소홀히 하였다.</li> <li>- 사회공헌활동추진은 임·직원의 성금으로 추진되는 공헌활동임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집행대상 및 절차의 객관성 확보, 결과의 공개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li> </ul>			
11	<p>○ 병가 사용자 증빙자료 징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공사는 국내 최고의 여자유도선수단 육성으로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을 예방하고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여자유도선수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li> <li>- 유도선수단의 복무에 관하여는 여</li> </ul>	<p>① 취업규칙 등 복무 관련 사규는 조직의 질서유지를 통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p>	교육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자유도선수단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7조(복무)⑩항에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수단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공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p> <p>- 병가의 경우 同 시행내규 제12조 (휴가 등)②항에 “휴가·휴직을 얻고자 하는 감독과 선수는 휴가·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및 제14조(병가)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훈련 또는 경기에 임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병가 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p> <p>-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감독을 포함한 5명의 3일 이상의 병가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중 부상으로 인한 수술 등으로 총 6회 68일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팀에서는 3일 이상의 병가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2건만 제출받았을 뿐 4건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미징구 4건 중 2건은 2015년 9월 감사일 현재 사후징구)</p>	<p>②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물론 관리자인 소속장도 관련 규정을 숙지·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p> <p>③ 아울러 향후 재발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p>		
12	<p>○ 휴가·출장 등 근태관리 철저</p> <p>- 취업규칙 제22조(휴가신청)에 따르면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장에게 휴가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 제15조(출장)따라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출장명령을</p>	<p>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p>	현지 시정	

연월일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받은 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런데 감사기간중 부서별 근태현황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근무 시작시간인 09:00시 이후에 당일 휴가승인을 받고 휴가를 실시하거나 휴가일 다음날에 휴가승인을 얻어 휴가를 실시한 경우가 총 43건이었으며, 기지(역) 근무자가 본사(회의,교육등) 출장시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참석하는 등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해당부서에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현지 교육을 실시하였다.</li> <li>- 또한 이와 관련하여 근태관리 총괄부서에 근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서 사례전파를 통한 교육을 실시토록 현지조치 하였다.</li> </ul>			